

'9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(안)

의안
번호

55

제출연월일 : 1999. 2.
제출자 : 영주시장

I. 제안사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5번지 일대에 경륜훈련원을 건립하고자 '97.12.23 부지매입 위탁협약을 맺고 '98.12.30 동 부지중 국유재산(산림청소관)을 영주시에서 위탁매입하였으며, 경륜훈련원 건립을 위하여 '99 상반기중 사업시행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매각하고자 함.

II. 주요내용

- 시유재산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매각
 - 재산위치 :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105번지 외21필지
 - 매각면적 : 361,060 m² (109,220평)
 - 매각예정금액 : 704,353 천원

III.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 : 덧붙임

-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.
- 199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1부.
- 매각대상 재산 위치도 1부.

IV. 관련법규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공유재산 관리계획서

199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(단위 : m²,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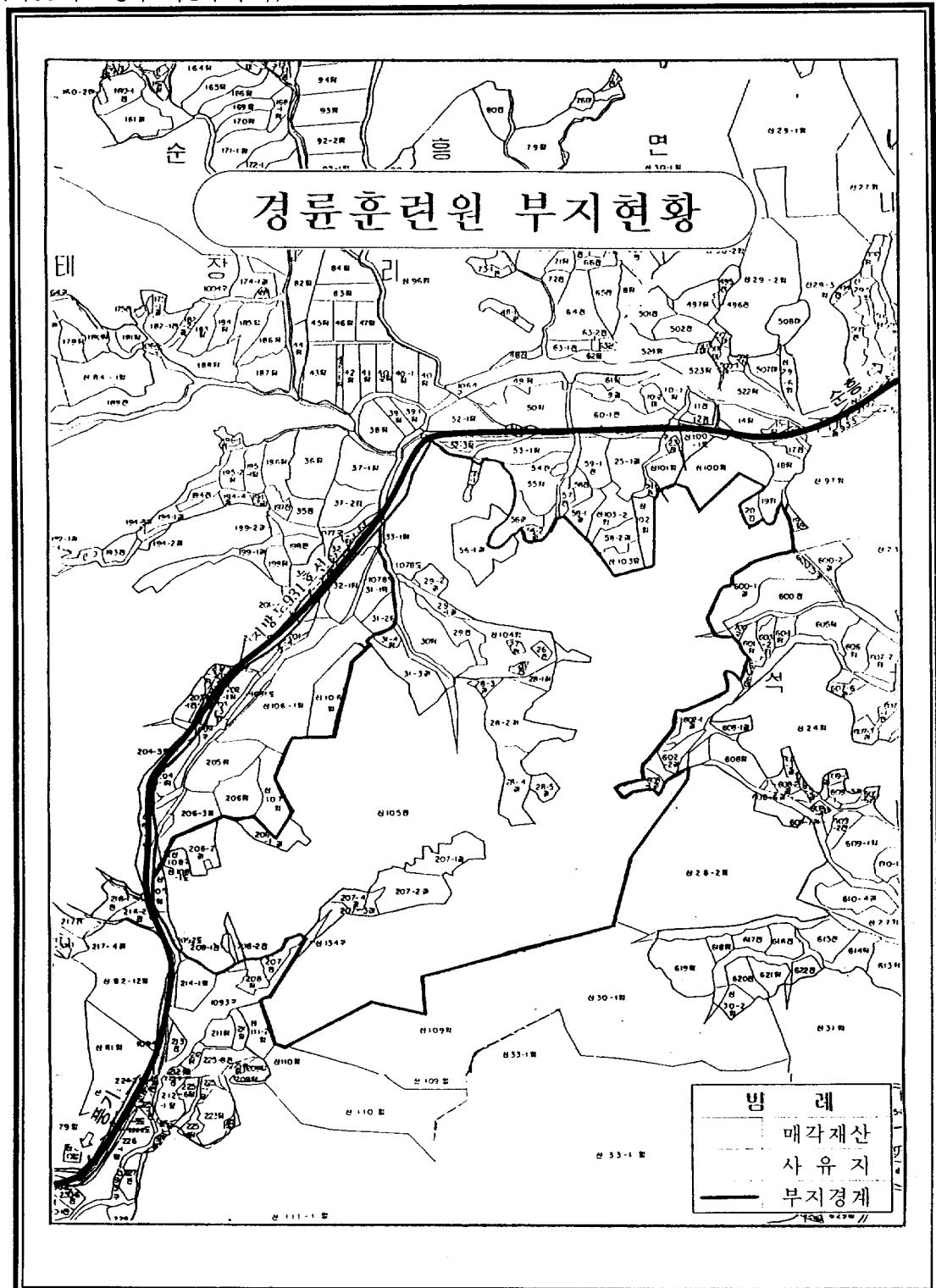
구 분		기 충 인		금 회 상 정		합 계	
구	분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
1. 대 입	토지	5	6,248	118,712			5
	건물						6,248
	전용						118,712
2. 교환으로 취득	토지						
	건물						
	토지						
3. 기타 취득	토지						
	건물						
4. 매각	토지	2	3,243	341,810	1	361,060	704,353
	건물	1	426,96	56,202			
	토지	2	3,243	341,810	1	361,060	704,353
	건물	1	426,96	56,202			
5. 양여	토지						
	건물						
6. 교환으로 처분	토지						
	건물						

199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(7 - 4)

(단위 : m², 천원)

회계명 : 일반회계

일련 번호	재 산 소 재 지	표 시 일단의수량	매각수량 (m ²)	추정가액	매각시기	매각사유	매수자	비고
계	토지		361,060	361,060	704,353			
1	임야	순흥 대장 산105	303,281	303,281	310,094	99상반기 경륜훈련원 유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		
2	전	" 28-1	2,340	2,340	15,327	" "		
3	과	" 28-2	9,157	9,157	61,810	" "		
4	과	" 28-3	919	919	6,571	" "		
5	과	" 28-4	4,729	4,729	29,556	" "		
6	과	" 28-5	1,331	1,331	7,787	" "		
7	과	" 29-1	1,622	1,622	11,597	" "		
8	과	" 29-2	1,535	1,535	9,440	" "		
9	과	" 31-3	5,468	5,468	43,744	" "		
10	담	31-4	841	841	7,359	" "		
11	전	" 55-1	821	821	5,747	" "		
12	과	" 56-1	6,574	6,574	41,045	" "		
13	과	" 56-2	1,301	1,301	8,457	" "		
14	과	" 206-1	2,794	2,794	21,654	" "		
15	과	" 206-2	3,448	3,448	28,446	" "		
16	과	" 207-1	4,620	4,620	28,875	" "		
17	과	" 207-2	6,110	6,110	39,104	" "		
18	과	" 207-3	2,276	2,276	15,363	" "		
19	과	" 207-4	1,243	1,243	8,390	" "		
20	전	" 208-1	249	249	1,805	" "		
21	전	" 208-2	208	208	1,508	" "		
22	전	" 208-3	93	93	674	" "		



지방재정법

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,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·분석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계획과 취득 및 처분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94.12.22]

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-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 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
 - 1.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(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
 - 2.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(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)
-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·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신설 95.5.16>
 - 1.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
 - 2.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
 - 3.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
 - 4.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
 - 5.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
 - 6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
 - 7.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
 - 8.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·처분
 - 9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·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·처분
- ④ 제2항에서 "1건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95.5.16>
 - 1. 동일한 취득·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
 - 2.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
 - 3.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 - 4.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 - 5. 분할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 - 6.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취득·처분결과의 보고범위·서식등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. <신설 95.5.16>